

의안번호	2208061
의 퇴 인	이인선 의원
회 답 일	2025. 2. 18.
추 계 번호	25F07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적용기한 6년 연장

【비용추계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비용추계 결과

-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기업에 대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로 6년 연장하는 경우
 법인세 및 소득세수는 2027년 23억 원 2036년 12억 원 등 2027년부터
 2036년까지 총 10년간 552억 원(연평균 55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 동 규정의 세액감면이 5년간 적용되므로, 세수효과는 2027~2036년까지 발생

[표 1]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감소: 법인세 및 소득세, 2027~2036년

(단위: 억 원)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누적	연평균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적용기한 6년 연장(안 제12조의2제1항)	23	46	69	80.5	92	92	69	46	23	11.5	552	55.2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2조의2제1항 (연구개발특구에 입주 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적용기한 6년 연장)	○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 및 연구소기업에 대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6년 연장 - 적용기한: (현행) 2025.12.31 → (개정안) 2031.12.31	

III.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12조의2제1항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 부칙에 따라 개정안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전제하며, 세수효과는 신고 및 납부시기에 따라 2027년부터 발생
 - 개정안에 따른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은 2026~2031년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기업이 감면대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세수효과는 2027년부터 발생한다고 가정
 - 동 규정의 세액감면이 5년간 적용되는 것을 고려하면, 세수효과는 2027~2036년까지 발생
-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기업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2020~2024년 연평균 감면실적(92.7억 원)을 바탕으로 추계
 - 「조세지출예산서」 상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실적은 최근 5년('20~'24년) 평균 92.7억 원 수준
 - 동 규정은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해 3년간 100%, 2년간 50%의 감면율이 적용되므로 연평균 실적에 '1/4'를 곱하여 신규 입주기업에 대한 연 단위 발생액(100% 감면기준)을 계산하고, 향후 세수효과를 계산
 - 신규 입주기업의 연 단위 감면액(100% 감면) = 92.7억 원 × 1/4 = 약 23억 원

[표 2]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배분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2026년 입주										
2027년 입주										
2028년 입주										
2029년 입주										
2030년 입주										
2031년 입주										

주:  는 100% 감면,  는 50% 감면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제도개요 및 감면실적

- (제도개요)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여 생물사업·정보통신산업 등 감면대상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 해당 구역의 사업장에서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감면대상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를 포함하여 3년간 100% 감면, 이후 2년간 50% 감면
 - 적용기한: (현행) 2025.12.31. → (개정안) 2030.12.31.
- (감면실적) 「조세지출예산서」 상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실적은 2020년 105억 원, 2024년(잠정치) 75억 원으로 연평균 92.7억 원 수준
 - 동 규정은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의 실적 등에 따라 감면액 변동이 큰 편

[표 3]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실적: 법인세 및 소득세, 2020~2024년
(단위: 억 원)

	2020	2021	2022	2023	2024p
법인세	105	52	116	114	75
소득세	0.4	0.7	0.4		
합계	105.4	52.7	116.4	114	75

주: p는 잠정실적

자료: 대한민국 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신고연도

나. 추계방법

-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기업이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2020~2024년 연평균(92.7억원) 감면실적 수준이 향후 5년간 유지될 것으로 가정하고, 연평균 감면실적을 연간 감면액으로 환산하여 시점별 배분
 - 신규 입주기업 연간 감면액(100% 감면) = 92.7억 원 $\times$ 1/4 = 약 23억 원
 - 3년간 100%, 2년간 50%의 감면율이 적용되므로, 4로 나누어 환산

[표 4]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추정치: 2027~2036년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2026년 입주	23	23	23	11.5	11.5					
2027년 입주		23	23	23	11.5	11.5				
2028년 입주			23	23	23	11.5	11.5			
2029년 입주				23	23	23	11.5	11.5		
2030년 입주					23	23	23	11.5	11.5	
2031년 입주						23	23	23	11.5	11.5
합계	23	46	69	80.5	92	92	69	46	23	11.5

주: □는 100% 감면, ▨는 50% 감면

다. 추계결과

-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기업에 대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적용 기한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로 6년 연장함에 따라 법인세 및 소득세수는 2027년 23억 원 2036년 12억 원 등 2027년에서 2036년까지 10년간 총 552억 원(연평균 55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표 5]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감소: 법인세 및 소득세, 2027~2036년

(단위: 억 원)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누적	연평균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적용기한 6년 연장(안 제2조의2 제1항)	23	46	69	80.5	92	92	69	46	23	11.5	552	55.2

IV. 부대의견

-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세제분석2과	이수인	백경엽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수인	02-6788-4836	suin2025@assembly.go.kr